

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○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의원입니다.

○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도시형 생활주택은

당초 도시지역 1~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

고품질의 소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

도입된 주택유형으로,

전에는 전용면적 60㎡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(소형 주택)만

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해왔습니다.

○ 국토교통부는 3~4인 가구를 위한 중·소형 평형의

주택 공급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

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,

이에 따라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.

- 즉, 3~4인 가구를 위한 국민주택규모,
전용면적 85m² 이하 세대로 구성된
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.
-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
‘소형 주택’의 명칭을 ‘아파트형 주택’으로 새롭게 분류함에 따라
조례상 용어를 상위법의 정합성을 맞추고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